

의안
번호

3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0. 18.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인순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345호

다. 제출일자 : 2024. 09. 30.

라. 회부일자 : 2024. 10. 15.

2. 제안이유

-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나.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라. 실태조사 (안 제6조)
- 마. 여성폭력 예방교육 (안 제7조)
- 바.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8조)
- 사. 비밀 준수 의무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 라.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10. ~ 2024. 10. 1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 정의된 폭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까지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2018.12.24., 시행 2019.12.25.)을 상위법으로 변경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현 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 책무사항 포함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정한 지자체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정안에 맞추어 지역연대 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 조항을 삭제하여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 2.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여성폭력 피해 현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5.그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나.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다.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라.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마.여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	--

○ 안 제6조(실태조사) 실효성 있게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상위법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의 경우 필요시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조항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실태조사)①구청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u>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u>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여성폭력 발생요인·발생유형·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제6조(실태조사)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u>필요한 경우</u>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고 인정하는 사항	
④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	④ (삭제)

○ **현행 조례 제5조~제14조(지역연대 설치·운영) 조문 삭제**

상위법 제11조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설치·운영하도록 한 지역연대(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현행 3장 21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항을, 9조의 조항으로 일괄 정비함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중심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음.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